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4-21
----------	---------

제출연월일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0년부터 사업비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1997년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분양절차도 마무리되어,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상실된 바, 그간 형식적으로 존속해온 특별회계 운영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1. 17. ~ 2. 6.)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